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민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1108

발의연월일: 2021. 6. 25.

발 의 자:김민석·강득구·고영인

박성준 • 이상헌 • 이용빈

이원욱 • 이장섭 • 진성준

최혜영 · 홍정민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 상 사회복지사업에는 아동에 대한 보호와 양육 등과 관련한 복지사업이 포함되어 있음.

그런데 최근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아동학대관 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사회복지법인의 임원,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가 되지 못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자격관리를 강화하는 한편, 사 회복지시설의 장이나 종사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하도록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사회복지법인의 임원,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가 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사람을 포함하고,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(안 제19조제1항제1호의9. 제35조제2항ㆍ제3항 및 제35조의2제2항ㆍ제3항).

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1항에 제1호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의9. 제1호의5부터 제1호의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- 가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 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다.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제35조제2항제1호 중 "제1호의8까지"를 "제1호의9까지"로 하고, 같은
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③ 시설의 장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.

제35조의2제2항제1호 중 "제19조제1항제1호의7 또는 제1호의8"을 "제1 9조제1항제1호의7부터 제1호의9까지의 어느 하나"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종사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19조제1항제1호의9, 제35조제2항제1호 및 제35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9조(임원의 결격사유) ① 다음	제19조(임원의 결격사유) ①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	
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.	
1. ~ 1의8. (생 략)	1. ~ 1의8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1의9. 제1호의5부터 제1호의8까
	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
	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7호
	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
	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다
	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
	당하는 사람
	<u>가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</u>
	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
	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
	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
	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
	<u>나지 아니한 사람</u>
	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
	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
	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
	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	다.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
	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

- 2. 3. (생략)
- ② (생략)

제35조(시설의 장) ① (생 략)
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.
- 1. 제19조제1항제1호, 제1호의2 부터 제1호의8까지 및 제2호 의2부터 제2호의4까지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. • 3. (생략) <신 설>

제35조의2(종사자) ① (생 략)
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.
- 제1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
- 2. (생 략) <신 설>

리	ŀ

- 2. · 3. (현행과 같음)
- ② (현행과 같음)

제35조(시설의 장) ① (현행과 같 유)

(2)	 	 		 	-	 	_	_	_	_	_	_	_	_	_
	 	 	-	 		 -	_	_	_	_	_	_	_	_	_

1.				
	<u>제</u>	1호의9끼	<u>}ス]</u>	
				_

- 2. 3. (현행과 같음)
- ③ 시설의 장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.

제35조의2(종사자) ① (현행과 같 음)

2
<u>.</u>

- 1. 제19조제1항제1호의7 또는 1. 제19조제1항제1호의7부터 제 1호의9까지의 어느 하나----
 - 2. (현행과 같음)
 - ③ 종사자가 제2항 각 호의 어

<u></u> -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.